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8

제 안 년 월 일 : 2021년 11월 23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제안경위

○ 지난 2021년 10월 15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798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동 조례안을 보완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안 제3조).

나.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방법과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입학준비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기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금은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